

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926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주택법」 제73조에 의거 2016년도에 수립된 『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』의 타당성을 검토하고,
나. 「주택법」 제72조에 의거 『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』 재정비(안)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

- 대상범위 :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
- 목표연도 : 2025년
- 목표 및 방향
 - (목표)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
 - (방향) 리모델링 활성화, 공공성 확보, 공공지원 강화

나.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

- 2025 주거종합계획
- 2030 서울플랜(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)
- 2030 서울생활권계획 등

다.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

- 서울특별시 연도별, 생활권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
- 수요판단기준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물량 예측

라.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

-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가 상수, 하수, 학교, 교통 등의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검토됨.

마.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

-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 시기 조정

바.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관리방안

-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다양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주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

사. 리모델링 지원방안

-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지속 추진
-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등 재정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 제72조, 제7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의견청취사항

※ 작성자 : 공동주택지원과 리모델링지원팀 최미선 (☎ 2133 -7144)